

2006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19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11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2006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2006년도 평창군기금운용 총규모는 총 3개기금 3,43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3백만원이 증액 되었음.

나. 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.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06년예산액	전년도예산액	증감(△)
합 계	3,438,637	3,296,082	142,555
평창군식품진흥기금	95,154	76,816	18,338
평창군사회복지기금	2,311,421	2,335,314	△23,893
평창군재난관리기금	1,032,062	883,952	148,110

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자치법 제118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년도개시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 제110조(기금의 운용등)

- ①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15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.